

# 최신 시행 법령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2호, 2024. 9.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을 추가하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추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구조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최신 시행 법령

##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5. 3. 25.] [법률 제20852호, 2025. 3.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 판매, 판매 목적의 진열 · 보관 · 저장, 판매증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 최신 시행 법령

## 3.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3. 27.] [국토교통부령 제1465호, 2025. 3.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사용사업자 중 우수사업자를 지정하는 기준에 경영상태 및 기술역량 등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고,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드론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국가에서 구축한 드론 관련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우선 입주 또는 사용을 추가하며, 우수사업자가 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1차 위반 시 3개월의 효력정지, 2차 이상 위반 시 지정 취소를하도록 하는 등 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지정 인증서 및 지정 공인 인증 마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최신 시행 법령

##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4. 1.] [국토교통부령 제1473호, 2025. 4.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절차의 효율화 및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심사단의 심사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이원화되어 있던 인증 절차를 인증심사단의 심사로 일원화하고, 인증심의위원회는 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증운영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인증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심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물류단지 지정 전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던 것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최신 시행 법령

##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4. 8.] [대통령령 제35435호, 2025. 4.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온실가스 목표 관리 제도를 장기적·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목표를 관리하는 계획기간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의 지정 및 이행 점검의 절차를 정비하며, 녹색인증 등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전기 사용량 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제도 시행에 관한 업무의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온실가스 목표 관리의 계획기간 확대(제19조제3항)

온실가스 목표 관리를 위한 계획기간을 1년에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온실가스관리목표를 부여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5년 단위로 설정하는 기간으로 확대함.

#### 나.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의 지정 절차 개선(제20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의 지정 시한을 계획기간 전전년도 6월 30일에서 계획기간 전년도 6월 30일로 변경하고, 계획기간이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중에도 새롭게 지정 기준에 해당하게 된 업체를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최신 시행 법령

##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4. 8.] [대통령령 제35435호, 2025. 4. 8., 일부개정]

### 【주요내용】

다. 신규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관리 방법 및 절차의 보완(제2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계획기간 확대에 따라 계획기간 중에 새롭게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로 지정되는 자에 대한 목표 설정 기한을 지정연도 다음 연도의 9월 30일로 하고, 목표의 이행을 관리하는 기간을 지정연도 다음다음 연도부터 그 연도가 속하는 계획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로 하는 등 신규 지정 업체에 대한 관리 절차를 추가함.

라. 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제27조의2 신설)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의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가 자발적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업체를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녹색인증 ·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연장(제57조제6항)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